

2026년 서울형 R&D 지원사업

약자 및 돌봄로봇 기술개발 지원사업 공고

2026년 약자 및 돌봄로봇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월 30일

서울경제진흥원 대표이사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약자가 겪는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 및 로봇 개발을 통해 제품 및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결과물이 약자에게 전달되어 이용·활용됨으로써 약자가 겪는 문제해결 성과 창출

■ 지원유형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 (필수) 서울 소재 기업 (개인, 법인) · 실증기관: (필수) 서울 소재 실증기관 1개 이상 신청 선택 (5순위까지 신청 가능) - 공동연구개발기관: (선택) 기업, 대학, 연구소 (지역제한 없음) ※ 공동연구개발기관 중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의 '중견기업',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해당하지 않는 '대기업'까지 포함 ※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도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가 가능
지원금액	- 과제당 최대 2억원 이내 ※ 연구개발과제평가단 평가의견에 따라 지원금액 조정 가능
연구개발 기간	- 과제당 최대 1년 (협약체결일로부터 최대 12개월)
지원분야	- 약자기술개발 : 혁신기술 적용하여 약자에게 도움이 되는 핵심기술을 가진 전 분야 (인공지능, IoT,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혁신기술 활용) * 약자동행지수참조 - 돌봄로봇개발 : 약자 돌봄로봇분야 기술개발(하드웨어 분야) (▲이동 ▲목욕 ▲배설 ▲유연착용형 ▲모니터링 ▲이승 ▲욕창 예방 ▲커뮤니케이션 ▲식사 보조로봇 등)
지원규모	- 총 20억원, 10개 과제 내외 · (약자기술개발) 8개 과제 내외(과제당 최대 2억/1년, 기술료 비대상) · (돌봄로봇개발) 2개 과제 내외(과제당 최대 2억/1년, 기술료 비대상)

■ 지원내용

- 우수·유망기술 사업화를 위한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및 시험인증 등 사업화 단계 지원
- 실증완료시 + 실증확인서(레퍼런스) + 후속지원(조달청 혁신제품 평가 일부면제 등)
- 사업 TRL: 6단계 이상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만 지원 가능

구분	TRL1	TRL2	TRL3	TRL4	TRL5	TRL6	TRL7	TRL8	TRL9
내용	기본원리	개념정립	개념검증	시작품		시제품	실용화		양산
	기초이론 정립	기술개념 정립	특허출원/기본성능 검증	설계제작	성능평가	설계제작 성능평가	신뢰성 평가	시제품 인증	시판/시판 후 연구

■ 지원분야

- 약자기술개발 8개 과제, 돌봄로봇개발 2개 과제 (총 10개 과제)
 - 실증기관: (필수) 서울 소재 실증기관 1개 이상 신청 선택 (5순위까지 신청 가능)
- 약자기술개발(8개 과제): 약자동행지수 6대 영역 및 10대 중점과제 위주 선정

영역	중점문제
생계·돌봄	1. 취약계층의 자립지원으로 생계 사다리 복원
	2. 돌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 확대로 회복력 제고
주거	3. 주거취약계층과 미래세대를 위한 주거 사다리 복원
의료·건강	4. 소외계층 건강격차 완화
	5. 정신건강 취약계층 건강 회복 촉진
교육·문화	6.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동등한 교육기회 확대
	7. 문화지원 확대로 문화여가 접근성 강화
안전	8. 안전취약계층 지원 및 선제 대응을 통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9.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 증진
사회통합	10. 시민 동행을 통한 사회결속 강화
기타	11. 기타 약자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

- 돌봄로봇개발(2개 과제): 약자 돌봄로봇 분야 기술개발 과제 선정

구분	개발내용
돌봄 로봇 개발	▶ 돌봄로봇 개발(이동, 목욕, 배설, 욕창예방, 식사보조로봇 등) R&D ▲이동 ▲목욕 ▲배설 ▲유연착용형 ▲모니터링 ▲이승 ▲욕창 예방 ▲커뮤니케이션 ▲식사 보조로봇 ▶ 이동 보조, 정서 지원, 재활 보조 등 돌봄 기능 구현 소프트웨어 개발 ▶ 사회적 약자에 적합한 맞춤형 로봇 설계 등

※ 연구개발기관 자격 관련 상세 내용 4. 신청자격 참조

2. 지원 원칙 및 기준

■ 기본 원칙

- 서울시 'AI, AI+X 융복합' 혁신기술 집중투자 방향에 따라, AI 및 AI+X 융복합 기술 적용 과제 대상 가점 부여
 - ※ 'AI 및 AI+X 융복합 기술 적용 우대가점 신청 과제인 경우' 종합관리시스템 상 가점 신청 및 내용 작성 필수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개발목표 및 내용이 동일한 과제로 서울형 R&D 지원사업 및 중앙정부·타 지자체 R&D·기업 지원사업에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음
- 기술개발 및 시험생산, 양산 등을 위한 사업화 관련 연구개발비 지원
 - 인건비, 시제품·시제품 제작, 안전성·유효성 평가, 시험인증 등 기술사업화를 위한 사업화 R&D자금 지원
 - 약자 R&D의 경우, 해외시장 진출 촉진을 위한 사업비 계상 항목 한정적 허용
(B2G 컨설팅 비용, 해외 인증비용, 통역비용, 전시회 부스전시 비용)
 - ※ 전시회 부스전시 비용의 경우, 협약 체결시 전시회 참가 관련 세부 계획서가 수반되어야 함
- 연구개발비는 실시간연구개발비관리시스템을 통해서만 집행이 가능함
- 동 지원사업의 협약 과제 중 AI 적용 과제는 개발결과물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데이터 품질 인증」을 반드시 신청하여야 하며 관련 비용(연구활동비)을 계상하여야함
 - ※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통하여 'AI 및 AI+X 융복합 기술 적용'으로 인정된 과제인 경우
- 협약체결 시, 시지원연구개발비에 대한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함
 - 보증기간 : 해당연도 연구개발기간 + 6개월
 - ※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발행 비용 연구개발비 소급 가능
 - ※ 최종 선정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미제출시 협약 중지
 - ※ 연구개발비 편성 기준 및 세부사항은 '서울시 산학연 연구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참고

■ 지원 기준

- 전체 연구개발비는 시지원연구개발비(현금)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및 현물)로 구성
 - (시지원연구개발비) : 전체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 ※ 평가결과에 따라 시지원연구개발비 차등지급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전체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부담
 -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비율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구 분	전체 연구개발비(가)	시지원연구개발비(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총액(다)	현금(라)	현물(마)
구성 기준	(나)+(다)	(가)의 75% 이하	(가)의 25% 이상	(다)의 10% 이상	(다)-(라)
(예시)	266,667,000원 (100%)	200,000,000원 (75%)	66,667,000원 (25%)	6,667,000원 (2.5%)	60,000,000원 (22.5%)

3. 연계 지원

지원시기	프로그램명	세부내용
협약체결 시	연구지표 진단 프로그램	최종 선정과제의 연구 내실화 및 기술사업화에 부합하는 연구계획 수립을 위하여, SBA 협력 공인시험인증기관을 통한 목표달성도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의 개선의견 진단 및 가이드 제공 ※ SBA 협력 공인인증기관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협약체결 후	R&D 현장어드바이저	사업화 전문가(VC/AC) 및 유관기관 전문가(지식재산권 지원, 규제애로 등)로 구성된 R&D 어드바이저가 기업현장에 방문하여 사업화 전략 및 기술 자문 제공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제도 어드바이저	B2G(공공기관) 매출을 목표로 하는 기업에게, '혁신(시)제품 지정제도' 전문가와의 상담회 개최 또는 수행 중인 주관연구개발기관 방문 및 상담
	데이터 품질 인증 지원	보유 데이터의 품질 인증 수수료 감면 지원 및 데이터 품질 고도화를 위한 데이터 오류 진단 보고서 제공 등
	데이터 보증 연계 지원	데이터 가치 평가 기반 보증 발급 지원 ※ 데이터보증 연계 지원 희망기업은 연구개발비 내 데이터 가치 평가 비용 계상
	해외 규제·인증 상담회	해외 규제·인증 전문기관 소속 전문가를 매칭 하여 지원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상담회 개최
	해외시장 진출 지원	서울형 R&D(약자사업) 참여기업 대상 글로벌 유망 전시회 참여기회 제공에 따른 유효 커뮤니티 발굴 및 약자 R&D 기업(기술) 홍보, 바이어 매칭 등 참여기업의 파생성과 창출 유도
	서울테크서밋	서울 지역 딥테크 기업 및 학계·연구계 전문기관의 산학연 협의체로, 회원 등록 시 산학연협력사업 연계 및 네트워킹 지원 ※ 협약기간 중 개최한 협의체 활동에 2분의 1을 초과하여 참여한 경우 최종평가 시 가점 부여 예정
최종평가 후	조달청 혁신제품 등록시 공공성 평가 일부 면제	약자 기술 실증 완료 시 1년간 조달청 혁신제품 공공성 평가 최대 3개 면제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14조 5항의 6))

※ “3. 연계지원”의 세부 추진내용은, 협약 이후 대상 과제에 상세 내용 안내 예정

4.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자격(필수)

- 서울시 소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 증빙서류 : 서울 관할 세무서로 등록한 사업자 등록증(본점 또는 지점)
 - ※ 단, 종된사업장을 서울 소재로 한 사업장은 해당하지 않음

■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자격(선택)

- 산(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의 ‘중견기업’,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대기업’
- 학(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에 각 호의 학교의 산학협력단
- 연(연구원):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그 밖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산업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 ※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경우 소재지 지역제한 없음
- ※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도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가 가능

■ 연구책임자의 자격

- 주관연구책임자: 상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자격을 갖춘 기업에 소속된 자로 대표자, 연구소장급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분야의 기술개발 수행능력과 경험을 갖춘 자
- 공동연구책임자: 상기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자격을 갖춘 기관에 소속된 교수, 연구원, 기업 대표·연구소장, 연구자 등 해당분야의 기술개발 수행능력과 경험을 갖춘 자

- ※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상세 자격, 권한 및 책임은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요령’ 참고

5.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세부사업명	공고기간	온라인접수 등록기간
약자 및 돌봄로봇 기술개발	'26.01.30. ~ '26.03.12.	'26.02.12. ~ '26.03. 12. 16:00

※ 서울경제진흥원 서울R&D지원센터 종합관리시스템 → 로그인 → 온라인 내용 입력 및 구비서류 등록
 ※ 접수미감일은 접속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신청 요망 (등록기간 확인 필요)

■ 신청방법 : 서울R&D지원센터 종합관리시스템(<https://seoul.mbd.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온라인 접수 등록기간은 2026년 2월 12일 09:00 부터 가능
- 신청 시 구비서류: 단계별 종합관리시스템(PMS)에 온라인 업로드(한글 또는 PDF)

구 분	서 식 명	해당		제출형태
		주관	공동	
단계1: 사업 신청 시				
계획서	연구개발계획서(반드시 직인 날인하여 파일 업로드)	○	-	한글 또는 PDF
서류	연구개발기관 및 사업자등록증(증명원)	○	○	PDF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	
	참여연구자(전체연구개발기관 대표,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 포함) ※ 공동대표일 경우 모두 작성, 각자 대표일 경우 대표 1인만 작성	○	○	
전자 등록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 신청자격 요건검토 확인서	○	○	시스템 입력
	연구개발과제 청렴 협약서 ※ 미제출 시, 평가 대상 제외 등 중대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	
	최근 3년 간 서울형 R&D 지원사업 및 중앙정부·타 지자체 R&D 지원사업 수행 현황 (연구책임자)	○	○	
붙임 [해당시]	해당하는 우대가점 증빙서류 각각 업로드 ※ 가점 사항은 종합관리시스템(PMS)에 체크 필수	○	○	한글 또는 PDF
붙임 [해당시]	지원제외 대상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 전문기관에서 요청한 자료 등	○	○	한글 또는 PDF
단계2: 발표평가 추천대상(서류평가 통과) 시				
계획서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서(반드시 직인 날인하여 파일 업로드)	○	-	한글 또는 PDF + EXCEL
서류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지원제외 대상 확인 필수) ※ 국세청 발급 재무상태표 제출	○	○ (비영리)	PDF
붙임 [해당시]	[별지서식 1-1] 연구장비시설 도입 계획서(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 [별지서식 1-2] 연구장비시설 심의요청서(부가세 포함 1억원 이상)	○	○	한글 또는 PDF

- ※ 파일 업로드시 개별 최대 용량은 20MB
- ※ 단계별 서식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제출

○ 신청절차



<신청 시 접수요령>

① 공고문 확인 및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 공고문 확인 : SBA R&D지원센터 - 알림마당 - 사업공고 (공고 게시글의 첨부 참고)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 주관연구책임자가 사업공고 게시글의 첨부 파일 중 계획서 양식을 받아 작성

② SBA 누리집(<https://www.sba.seoul.kr/>)에서 최초 주관연구책임자 개인회원 가입

- 우측 상단 회원가입 버튼을 누르면, 서울경제진흥원 누리집과 연동되며, 해당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진행
- ※ 기존 가입자는 별도 가입절차 없이 기사용한 계정 사용 가능
- ※ 주관연구책임자 개인명의로 회원가입 후, 사업자 공인인증서 전자서명으로 기업정보를 입력하므로 **개인회원 계정 명의 확인 및 사업자 공인인증서 준비 필수**

③ 종합관리시스템(PMS) 접수

- SBA R&D지원센터 누리집(<https://seoul.mbd.kr/>) 왼쪽 하단 '종합관리시스템' 클릭 하여 접속
- 주관연구책임자 아이디로 PMS 로그인
- 종합관리시스템 왼쪽 상단 사업공모 **통합공고 중 신청 희망하는 사업명을** 클릭
- 기본정보, 과제분류, 연구개발기관, 참여연구자, 연구개발비 등 입력 및 내역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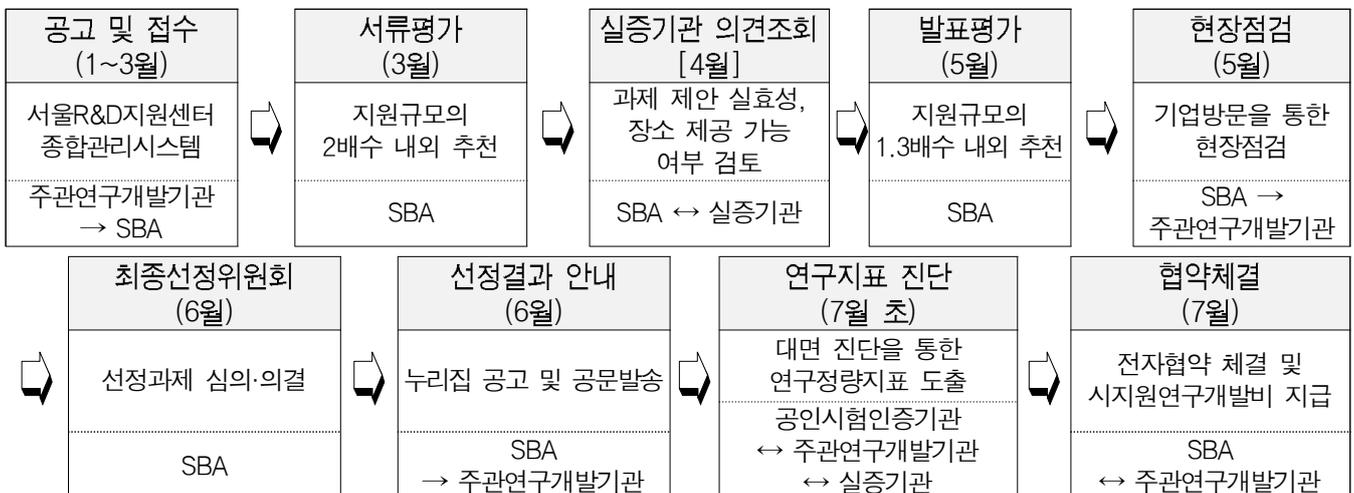
◆ 연구개발기관 등록 방법 (신규 사업 참여일 경우)

- SBA 누리집 개인회원 가입 후 R&D지원센터 종합관리시스템 로그인
- 좌측 메뉴: 기관정보 → 기관조회 → 새로입력 클릭 후 작성

- 첨부파일 탭에 연구개발계획서 및 기타 제반서류를 각 항목에 맞추어 업로드
- ※ 파일은 한 번에 10개 파일까지 업로드 가능, [저장] 후 추가 업로드 가능(**압축파일 업로드 금지**)
- 최종 업로드 후, 우측 상단 제출하기 버튼 클릭하여 최종 제출완료 상태 확인
- ※ 파일 업로드 직인 및 서명 포함, 임시저장 후 미제출시 접수 누락
- ※ 최종제출 후 접수내용 및 첨부파일 수정 불가
- ※ 시스템 체크사항과 증빙자료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불인정

6. 추진절차 및 선정기준

■ 추진절차



※ 상기 평가, 선정 협약 등 일정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요건검토와 관련한 사항은 「서울시 산학연 연구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8. 요건검토」 를 따름

■ 선정평가

① [서류평가] 기술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기술성 및 약자문제 해결 등을 중심으로 서면으로 평가

- 지원기술의 약자동행지수의 문제해결 목표 충족 여부와 해당 사업이 약자를 위한 문제 해결을 우선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지 확인
- 종합평점 60점 이상 과제 중 2배수 내외를 발표평가 대상 과제로 추천

$$\text{서류평가 평점} = \frac{\text{평가점수 합계} - (\text{최고점수} + \text{최저점수})}{\text{평가위원 수} - 2}$$

○ 서류평가 지표

구분	평가항목	세부 내용
기술성 (40)	기술 혁신성 및 우수성 (15)	· 제안 기술이 기존 기술 대비 혁신적이고 차별화된 아이디어인지 여부 · 기술의 목표 성능이 명확히 설정되고 객관적 근거(선행연구 등)를 제시했는지 여부 · 기술적 난이도가 높고, 해결 시 기술발전 기여도가 높은 도전적 과제인지 여부 · 기존 기술·특허와 중복되지 않고 독창성이 명확한지 여부
	연구개발 계획의 타당성 (15)	· 연구개발 목표와 추진전략이 현실적이며 명확한지 여부 · 연구개발 일정·단계별 추진계획이 합리적으로 제시되었는지 여부 · 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방법론 및 기술적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했는지 여부 · 과제의 예산 편성이 적정하며 현실적인지 여부
	연구역량 및 인프라 (10)	· 연구책임자 및 연구팀의 관련 분야 전문성 및 연구 경험이 충분한지 여부 · 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시설 및 장비 등 인프라가 충분히 확보되었는지 여부 · 참여기관 간 역할 분담이 명확하고 협력체계가 잘 구성되어 있는지 여부 · 기존 연구개발 성과, 논문, 특허출원 실적 등이 우수한지 여부
약자 문제 해결 (60)	문제해결 필요성 및 타당성 (20)	· 해결 대상 약자 문제의 명확한 정의와 구체적 근거가 충분히 제시되어 있는지 여부 · 현장 조사 및 기존 연구 등을 통해 문제의 심각성과 시급성을 충분히 입증했는지 여부 · 해당 기술로 문제가 근본적으로 개선될 가능성 및 효과가 명확히 제시되었는지 여부 · 기존 유사 기술 대비 문제해결 우위성이 명확히 존재하는지 여부
	약자 참여 및 의견 반영 계획 (20)	· 연구개발 과정에 실제 약자의 의견 수렴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었는지 여부 · 약자 참여 및 테스트, 피드백 반영 등 사용자 중심적 개발 계획(마일스톤)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었는지 여부 · 사용자 참여 방식(인터뷰, FGI, 테스트)의 적정성 및 현실성 여부 · 참여 약자 수, 구성, 질적 수준 등 계획의 적정성 여부
	기술 적용성 및 실용화 가능성 (10)	· 기술 개발 결과가 현장에 즉시 적용될 수 있는 수준으로 계획되었는지 여부 · 향후 기술의 상용화, 실용화 및 실제 보급 가능성이 명확한지 여부 · 기술의 경제성(예상 가격, 유지비 등) 및 보급 가능성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 · 기술이 제도·정책과 연계되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했는지 여부
	기대효과 및 사회적 파급력 (10)	· 약자 삶의 질 개선(신체적, 사회적, 경제적 효과 등)의 기대효과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 여부 · 기술 개발을 통해 예상되는 사회적 비용 절감(의료비, 돌봄비 등) 효과가 구체적·현실적인지 여부 · 과제 성공 시 사회적 인식 개선 효과, 정책·제도 개선에 기여 가능성이 높은지 여부

※ 상기 선정평가 지표는 향후 변경될 수 있음

②-1 실증기관 의견조회

○ 실증기관 범위 (개발 제품, 서비스 대상 실증에 적절한 서울 소재 기관)

- 서류평가 통과한 연구개발(실증)계획서의 제안 내용 기반 실증기관의 수용 의사 등 의견 수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래 공공기관 중 서울 소재 공공기관에 한함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지자체 출자기관 - 공기업(공사 및 공단 등),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 의료법 3조3에 의한 종합병원이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지정된 보건의료기관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특수교육기관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한 노인의료복지시설 등
--

- 기업이 아래 누리집 주소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1.실증기관 2.담당기관(부서)를 선택하여 기입하고 (1~5순위) 지정한 곳을 토대로 매칭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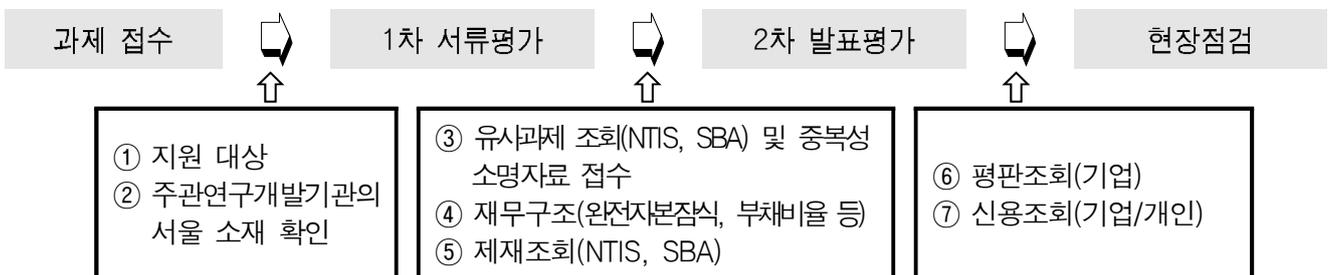
구분	누리집 주소 (예시)
서울시 본청	http://org.seoul.go.kr/org/orgChart.do
서울시 본부 및 사업소	https://org.seoul.go.kr/bonbu/orgChart.do
서울시 공사출연기관	https://www.seoul.go.kr/seoul/pubcorp.do
서울시의회	https://org.seoul.go.kr/smc/orgChart.do
자치구	https://www.seoul.go.kr/seoul/autonomy.do
서울특별시 교육청	https://www.sen.go.kr/www/office/org/org_1.jsp

* 서류평가 통과 후 실증기관 의견조회 기간 내 실증기관 매칭이 성립되지 않는 기업은 최종 지원 불가

②-2 요건검토

○ 선정 평가 제외 대상 사전 검토 사항

- 지원 대상 부합 여부: 공고문의 접수결격 사유 해당 여부 검토
- 중복 수혜 여부: 서울형 R&D 지원사업 기업 DB 및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활용 과제차별성 검토
- 부정 수혜 여부: SBA 지원사업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참여제한) 여부 확인
- 재무건전성 여부: 부채, 세금체납, 채무불이행, 부도, 회의, 법정관리, 신용불량 등에 대한 신용조사



③ [발표평가] 기술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매칭된 실증기관에서 진행될 실증계획서 및 추가 발표자료를 통해 연구개발과제의 사업성, 약자문제 해결 포함 실증 가능 중심 대면 평가

- 종합평점 60점 이상 과제 중 1.3배수 내외를 '지원 우선순위 부여 대상' 과제로 추천

$$\text{발표평가 평점} = \frac{\text{평가점수 합계} - (\text{최고점수} + \text{최저점수})}{\text{평가위원 수} - 2} + \text{가점} - \text{감점}$$

○ 발표평가 지표

구분	평가항목	세부 내용
기술성 (40)	기술 혁신성 및 우수성 (15)	· 제안 기술이 기존 기술 대비 혁신적이고 차별화된 아이디어인지 여부 · 기술의 목표 성능이 명확히 설정되고 객관적 근거(선행연구 등)를 제시했는지 여부 · 기술적 난이도가 높고, 해결 시 기술발전 기여도가 높은 도전적 과제인지 여부 · 기존 기술·특허와 중복되지 않고 독창성이 명확한지 여부
	연구개발 계획의 타당성 (15)	· 연구개발 목표와 추진전략이 현실적이며 명확한지 여부 · 연구개발 일정·단계별 추진계획이 합리적으로 제시되었는지 여부 · 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방법론 및 기술적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했는지 여부 · 과제의 예산 편성이 적정하며 현실적인지 여부
	연구역량 및 인프라 (10)	· 연구책임자 및 연구팀의 관련 분야 전문성 및 연구 경험이 충분한지 여부 · 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시설 및 장비 등 인프라가 충분히 확보되었는지 여부 · 참여기관 간 역할 분담이 명확하고 협력체계가 잘 구성되어 있는지 여부 · 기존 연구개발 성과, 논문, 특허출원 실적 등이 우수한지 여부
약자 문제 해결 (60)	문제해결 필요성 및 타당성 (15)	· 해결 대상 약자 문제의 명확한 정의와 구체적 근거가 충분히 제시되어 있는지 여부 · 현장 조사 및 기존 연구 등을 통해 문제의 심각성과 시급성을 충분히 입증했는지 여부 · 해당 기술로 문제가 근본적으로 개선될 가능성 및 효과가 명확히 제시되었는지 여부 · 기존 유사 기술 대비 문제해결 우위성이 명확히 존재하는지 여부
	약자 참여 및 의견 반영 계획 (15)	· 연구개발 과정에 실제 약자의 의견 수렴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었는지 여부 · 약자 참여 및 테스트, 피드백 반영 등 사용자 중심적 개발 계획(마일스톤)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었는지 여부 · 사용자 참여 방식(인터뷰, FGI, 테스트)의 적정성 및 현실성 여부 · 참여 약자 수, 구성, 질적 수준 등 계획의 적정성 여부
	기술 적용성 및 실용화 가능성 (10)	· 기술 개발 결과가 현장에 즉시 적용될 수 있는 수준으로 계획되었는지 여부 · 향후 기술의 상용화, 실용화 및 실제 보급 가능성이 명확한지 여부 · 기술의 경제성(예상 가격, 유지비 등) 및 보급 가능성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 · 기술이 제도·정책과 연계되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했는지 여부
	기대효과 및 사회적 파급력 (10)	· 약자 삶의 질 개선(신체적, 사회적, 경제적 효과 등)의 기대효과가 구체적/명확한 제시 여부 · 기술 개발을 통해 예상되는 사회적 비용 절감(의료비, 돌봄비 등) 효과가 구체적·현실적인지 여부 · 과제 성공 시 사회적 인식 개선 효과, 정책·제도 개선에 기여 가능성이 높은지 여부
	실증계획의 타당성 (10)	· 제안 기술과 적합한 실증기관(시설·기관·가정 등)의 구체적이고 현실적 선정 여부 · 실증 환경과 실제 사용환경의 유사성 여부 · 실증기관 선정 과정에서의 협력기관과의 사전 협의·동의서 확보 여부 · 실증 참여 대상자(약자)의 수와 특성(연령, 장애유형, 신체적·인지적 특성 등)의 적절성 · 참여대상자의 선정 기준과 방법의 현실성 및 타당성 · 대상자 선정 시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 반영 여부

※ 상기 선정평가 지표는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현장점검

- 전문기관은 신청과제의 최종 선정 대상 후보 도출을 위한 목적으로 “지원우선순위 부여 대상” 과제에 대한 현장점검 실시
 - 전문기관은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인력, 연구시설 장비 및 인프라 등 과제수행의 역량을 점검하고,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선정위원회에 평가할 지원대상 후보군 리스트를 제공해야 함
- ※ 현장점검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시 산학연 연구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참조

■ 최종선정위원회

- 전문기관장은 발표평가와 현장점검 등으로 도출된 ‘지원 대상 후보군’에 대하여 자격요건, 재무현황, 평판, 서울시책과의 부합성, 기술개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과제들에 대한 우선 순위를 최종적으로 결정
- ※ 현장점검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시 산학연 연구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참조

■ 우대가점 : 가점은 최대 5점까지 적용

- 종합관리시스템(PMS) 상 ‘우대가점 탭’에 해당사항 체크 후, 증빙서류 업로드 또는 해당 입력사항 기재(1,000자 이내)

해 당 사 항		가 점
공통	①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인 경우 (중복 가점 가능) ☞ 증빙서류 : 여성기업확인서, 장애인기업확인서	각 1점
	②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서울시 산학연 연구개발 지원사업」 과제를 수행한 최종평가 결과 ‘우수’로 판정을 받은 주관연구개발기관(기업) ☞ 증빙서류 : 서울형 R&D 지원사업 최종평가 결과 안내 공문(결과공문: 우수 표기 과제)	1점
	③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하이서울기업인 경우 ☞ 증빙서류 : 하이서울기업 지정서 또는 확인서	2점
	④ 접수마감일 기준, 연구개발기관이 SBA 지원시설 입주 또는 입주 예정 기업인 경우 ☞ 증빙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입주예정 확인서(해당 지원시설에서 발급)	1점
	⑤ 접수마감일 기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 ☞ 증빙서류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급)	1점
	⑥ 서울시 정책에 부합하는 AI 및 AI+X 융복합 기술을 적용한 기술개발 과제인 경우(2점) ☞ 증빙서류 : 종합관리시스템(PMS) 접수 시, 우대가점 입력사항에 관련 기술개발 내용 1,000자 이내 작성(미작성 시 가점 불인정) ※ 가점 최종 적용 여부는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통하여 확정	2점
AI 및 AI+X 융복합 기술 “우대가점” 입력 내용 - AI/AI+X 적용 지점: 전체 기술개발 내용 중 AI가 들어가는 모듈/단계 - 사용 데이터: 데이터 종류·출처·규모·정합성 확보 방법, 개인정보/윤리 기준 준수 계획 등 - 모델/기술 접근: 적용 알고리즘/모델 유형(예: 딥러닝/머신러닝/생성형/강화학습 등)과 학습·검증 방식		

□ 감점 사항

감점 사항	감점	확인
① 최근 3년 이내에 혁신법 제31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 또는 서울형 R&D 지원사업의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10점	전문기관 확인
②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 정당한 사유 : 1. 특별평가를 통해 과제 포기사유를 인정받은 경우, 2. 과제에 지원된 시지원연구개발비 전액을 반납하고 포기한 경우	1점	

7. 지원제외 대상

- ※ **연구개발기관(장), 연구책임자**가 아래의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지원제외
- ※ 기관자격, 접수서류, 수행 과제수, 인건비 계상률, 의무사항, 참여제한과 관련한 사항은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외 과제 중복성, 신용 및 기업 상태 등과 관련한 사항은 각 요건검토별 전문기관의 조회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함
- ※ 연구개발기관(장),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계획을 허위 작성하여 제출하였거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선정 이후라도 협약 이전에 해당 사실이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선정 취소 가능
- ※ 연구개발기관 외 외부기관을 통한 **연구개발계획서 대리작성, 명의도용, 대리 발표 등 부정 행위 확인시** 선정 취소 등 중대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구 분	내 용
기관 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및 신청요건에 부적합한 경우 ※ 연구개발내용에 유흥, 향락업 및 시행산업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선정 제외될 수 있음
접수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등 제반서류를 미제출 및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수행 과제수	- 서울형 R&D 지원사업 중 동일 세부사업 수행 중인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주관연구책임자 ※ 단, 접수 마감일 기준 수행 중인 서울형 R&D 지원사업의 잔여 연구개발기간이 6개월 이내인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주관연구책임자 예외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사업공고일 기준 3년 전까지 서울형 R&D 지원사업 4회 이상 선정된 경우
과제 중복성	- 신청된 세부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의 중복성(기지원, 기개발)이 인정된 경우
인건비계상률	- 연구책임자(주관, 공동)가 타 과제를 포함하여 과제수행 인건비계상률이 100%를 초과한 경우 ※ 연구책임자(주관, 공동)는 연구개발기간 동안 인건비계상률을 최소 30% 이상 계상하여야 함
의무사항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기술료 납부, 기술료납부계획서 제출, 회수금 및 제재부가금,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협약체결 시)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참여제한	- 연구개발기관, 대표자(공동대표, 각자대표 포함),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서울시 산학연 연구개발 지원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신용 및 기업 상태	- 기업의 부도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개인의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채 납)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채납 처분을 받은 경우 - (채무불이행) 민사집행법에 기해,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채불사업자 포함)로 등록된 경우 ※ 채납·채무불이행 관련 지원제외 적용 예외 대상(접수마감일 전에 적용되어야 함)

구 분	내 용
	<p>① 채납·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하거나 채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p> <p style="text-align: center;">< 관련 문의처 ></p> <p>※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 → 신용회복위원회(www.cors.or.kr, ☎1600-5500)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보증) 및 재기지원 보증 →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p> <p>- 최근 결산기준 부채비율 1,000% 이상인 경우 - 최근 결산기준 전액자본잠식(완전자본잠식) 기업인 경우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 상환우선주,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부채비율·자본잠식 관련 지원제외 적용 예외 대상(접수마감일 전에 적용되어야 함) ①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 3년 미만 중소기업 ②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주채권은행에 문의) ③ 시설투자 및 투자기관의 대출형 투자유치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요령 제12조의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①기업별 재무제표 확인(전기대비 당기의 유형자산 및 장단기 차입금 증가여부 확인, ②공장, 기계장치, 시설 등 구입(신축) 증빙자료)</p>
기타	- 기타 본 사업목적 및 지원분야 등으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본 공고문 내용 외 구체적인 지원제외 대상은 ‘서울시 산학연 연구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참조

8. 기술료 징수 기준

○ 본 사업은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요령 32조에 따라 기술료 미징수

9. 과제접수 및 수행 시 주의사항

- 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② 제출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 제재할 수 있음
- ③ 지원 우선순위 대상 시, 연구개발기관(기관, 기관별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및 연구개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여야 함
- ④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요령 및 서울시 산학연 연구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적용
- ⑤ 과제선정 후 불가항력적 사유 외 사업 포기 시, 추후 사업 참여 제재

※ 서울경제진흥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있으며,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관계법률 및 내부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반 행위를 확인한 누구든지 SBA 클린신고센터,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국민 권익위원회 등을 통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10. 의무사항

- 연구개발기관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계획을 연구개발비사용계획서에 기재해야 하며, 협약 이후 연구개발비사용계획에 따라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출자하여야 함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중간·최종정산을 위한 위탁정산수수료 필수 계상하여야함
(연구활동비-그 밖의 비용)
- 인공지능(AI) 기술 적용 과제는 인공지능 모델 및 시스템의 안정성·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인증 발급 비용을 연구개발비사용계획서에 필수로 계상하여야함(연구활동비-그 밖의 비용)
- 인공지능 「데이터 품질 인증」
- 협약이 체결된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서울형 R&D 참여기업 협의체(서울테크서밋)'에 자동 가입됨
- 최종평가 결과 '우수' 및 '보통'인 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장은 평가 결과 통보 다음 해부터 5년간 매년 성과활용보고서(활용현황 포함)를 전문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미제출 시 3년간 참여제한)

11. 관련 규정

-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요령 (2026. 1. 30.)
- 서울시 산학연 연구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2026. 1. 30.)
- ※ 세부사업별 신청자격, 지원기준, 평가절차 및 방법, 기술료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세부사업 공고문 참조
- ※ 세부사업별 지원규모 및 추진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및 추가 사업 안내는 전문기관 누리집에 공지

12. 문 의 처

■ 세부사업별 문의

세부 사업	연락처	이메일
약자 및 돌봄로봇 기술개발 지원사업	02-2222-3816	seongjin@sba.seoul.kr

■ 서울R&D지원센터 종합관리시스템 이용 문의

- 누리집주소 : (서울R&D지원센터) <https://seoul.rnbd.kr>
(종합관리시스템) <https://pms.rnbd.kr>
- 문의처 : 1899-8454 → (연결 후) 1번 선택